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이 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연도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10조).
- 장애인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및 시·군·구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하고, 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을 지정함(안 제24조 및 제25조).
- 장애인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6조 및 제37조).

II. 검토의견

1.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정의 관련(안 제2조제3호)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가목에서는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1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¹⁾, 안 제19조(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²⁾ 등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31조(행정처분)³⁾에서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에 있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에 관한 사항 외에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 전체 체계를 고려하여 법문을 정비한 수정의견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제 정 안	수정의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3.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	3.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u>인가·등록·신고된</u> 시설·법인 또는 단체	----- -----. 가. -----<u>등록된</u>----- -----
---	--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등 관련(안 제18조, 제19조 및 제31조)

안 제18조제2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또는 폐쇄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18조제2항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에 관한 사항

- 1) 안 제1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안 제19조(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에게 학위 취득·학력보완 및 학교교육에 준하는 기회 제공과 자립생활·취업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3) 안 제31조(행정처분) ①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외에 변경등록 또는 폐쇄신고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어떠한 경우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자가 변경등록 또는 폐쇄신고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제2항 후단 및 제3항을 신설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쇄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유사 입법례인 「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⁴⁾를 참고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수정의견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한편, 안 제19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안 제18조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유사하게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시설 폐쇄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폐쇄신고 의무 규정을 안 제18조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준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한 수정의견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4) 「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제 정 안	수정의견
제3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u>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 진흥센터, 시·도협의회,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 국가장애인문해교육센터, 시·도장애인문해교육센터</u> 가 아닌 경우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u>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진흥센터,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 국가장애인문해교육센터, 시·도장애인문해교육센터</u> ----- -----.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7조(과태료) ①----- -----.
3. 제35조를 위반하여 <u>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진흥센터, 시·도협의회,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 국가장애인문해교육센터, 시·도장애인문해교육센터</u>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 <u>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진흥센터,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 국가장애인문해교육센터, 시·도장애인문해교육센터</u> ----- -----

4. 부칙(안 제5조)

부칙 안 제5조에서는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9조(장애인 평생교육의 심의·의결)에서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평생교육법」 제10조제2항의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심의 사항⁵⁾에는 관련 규정을

5) 「평생교육법」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두지 않아 위원회가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부칙상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평생교육법」 제10조제2항제4호의2에 “「장애인평생교육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계획 및 제도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제 정 안 (부 칙)	수정의견 (부 칙)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u><신 설></u> 제10조제4항 중 “평생교육·장애인교육과”를 “평생교육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 -----. <u>제10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u> <u>4의2. 「장애인평생교육법」 제9조 각 호의 사항</u> <u><삭 제></u>

(전문위원 이 은 정)